**대관계약서**

작가 \_\_\_\_\_\_\_\_\_(이하 ‘작가’)와 임대인 \_\_\_\_\_\_\_\_\_(이하 ‘임대인’)은 20○○. ○○. ○○.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전시공간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계약은 임대인이 미술작품(이하 ‘작품’)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고, 작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)**

① 작가와 임대인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.

② 임대인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, 작품의 전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·보증한다.

**제3조(전시공간)** 본 계약상 임대의 대상이 되는 전시공간은 다음과 같다.

1. 소재지 : \_\_\_\_\_\_\_\_\_\_\_\_\_\_

2. 면적 : ○○㎡

**제4조(대관기간)** 임대인은 20○○. ○○. ○○.까지 전시공간을 작가에게 인도한다. 대관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○○. ○○. ○○.까지로 한다.

**제5조(작품의 전시)** ① 전시공간에서 개최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.

1. 전시명 : (가칭) \_\_\_\_\_\_\_\_\_\_\_\_\_\_

2.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: 20○○. ○○. ○○. ~ 20○○. ○○. ○○. 오전 ○○시 ○○분 ~ 오후 ○○시 ○○분. 다만, 매주 ○요일 및 공휴일은 전시공간의 휴관으로 전시를 하지 않는다.

3. 전시내용 : 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

② 작가는 전시기간 및 그 전후로 전시공간에서 개막식, 작가와의 대화 등 전시 관련 부대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과 일시, 행사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임대인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공간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전시공간의 인도 등)** ①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4조의 대관기간 이전에라도 전시공간을 답사할 기회를 ○회(회당 ○분 이상)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임대인은 전시공간에 전기, 조명, 수도, 소방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, 바닥, 벽면, 천장에 작품의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전시공간을 인도하여야 한다.

③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시공간의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시공간 인도 시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여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작가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위 문서를 작성하여 작가에게 교부할 수 있다.

⑤ 전항에 따라 임대인이 작가에게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를 교부한 경우, 작가는 그 문서가 전시공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. 서명한 문서의 원본은 임대인이 보관하고, 임대인은 작가에게 그 사본을 교부한다.

**제7조(대관에 대한 대가 등)** ① 작가는 대관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총 ○○○원을 지급한다. 대관의 대가에는 전기료, 수도료, 냉난방료 등 관리비가 포함된다.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.

1. 본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명목으로 총액의 ○○%인 ○○○원 지급

2. 전시공간 인도일인 20○○. ○○. ○○에 잔금 명목으로 총액의 ○○%인 ○○○원 지급

② 전항의 금액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
은행명 :

계좌번호 :

계좌주 :

**제8조(작품의 운송, 설치 및 관리)** ① 작가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운송, 설치 및 관리한다.

② 작가는 전시공간의 구조 및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시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임대인은 전시기간 중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린다.

**제9조(전시공간의 반환 및 원상회복)** 작가는 대관기간 말일까지 작품을 철거하고, 전시공간을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권리·의무의 양도금지)**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·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.

**제11조(성폭력, 성희롱 등 방지)** ① 당사자는 성폭력,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,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② 당사자는 형법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,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2조(계약의 해지)**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,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,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**제13조(손해배상)**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,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.

**제14조(분쟁해결 등)**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.

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(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)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**제15조(본 계약의 효력)**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.

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, 논의, 합의, 회의록, 비망록, 메모, 이메일,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,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.

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·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,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기타)**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, 관련 법규, 일반적인 상관례,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.

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작가와 임대인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계약 체결일 : 20 년 월 일

작 가 : 인

주 소 :

임대인 :

주 소 :

대표자 : 인